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 평가기준

1. 재무자원(30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30점)/10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대표사	구성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9.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9.2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9.0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8.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8.4	8.6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0.0

2. 경험자원(25점)

가. 동일공사 실적(8점) : 배점한도 적용

나.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1) 준공기한 경과 정도 : 배점한도 적용

2)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 미적용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별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별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별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별점(최근 2년간 반기별점 합계 × ½)

※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관된 벌점에 대해 적용. 다만, 2024년 8월 31일 이전 입찰공고 미적용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7점)

- 평가대상 : **건축공사업**
- 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0,463,741,916**
- 실적인정기준 :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 ※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 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기관)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대표사는 최근 5년간 업종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
-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 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 7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 + \text{부가가치세}) \times 5}$ 		

3. 인적자원(30점)

【인적자원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사공종	평가기준
1) 경력기술자	건축 (비주거)	▪ 동일공종(건축-비주거)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
2) 일반기술자	건축업종	▪ 동일업종(건축공사)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건축 (비주거)	▪ 동일공종(건축-비주거)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 ※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
4) 품질기술자	건축업종	▪ 동일업종(건축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5) 안전기술자		

【인적자원 유형별 평가기준】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대표사		구성원	
			평가 등급	평점	평가 등급	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5.0	A. 3.0이상 B. 2.0이상 C. 1.0이상 D. 1.0미만	5.0 4.0 3.0 2.0	좌동	
	2) 일반기술자	15.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9인 이상) C. 10인이상(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
	4)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3.0	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1)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

【경력기술자 심사방법】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 2)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건축-비주거)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4),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 품질기술자 A : 3년 이상 = 3.0
- 품질기술자 B : 3년 미만 = 2.0

⇒ 품질기술자 평점 = $\frac{3.0 + 2.0}{2} = 2.5$

4. 기술자원(15점)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8점)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주공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업종 평점 = 8 - {(90-시공평가 점수)×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주공종 : **건축**

○ 시공평가 관련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산정예시

적용례] 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	시공평가 점수
0000 국도 확장공사	200	90
0000 교량 보강공사	300	85
0000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frac{(200 \times 90 \text{점}) + (300 \times 85 \text{점}) + (500 \times 95 \text{점})}{(200+300+500)} = 91 \text{점}$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2점)

1) 신기술개발 실적 (1점)

【신기술개발 실적평가】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으로 평가	1.0	A. 2건 이상	1.0
		B. 1건	0.8

-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2) 신기술활용 실적 (1점)

【신기술활용 실적평가】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1.0	A. 50억원 이상	1.0
		B.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0.9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0.8
		D. 1억원미만	0.7

-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3점)

- 심사항목 : 최근년도 해당부문(건축)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 확인자료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대한건설협회)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3.0	A. 150%이상	3.0
		B. 100%이상	2.5
		C. 50%이상	2.0
		D. 10%이상	1.5
		E. 10%미만	1.0

-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중소기업 성장지원(2점)

- 심사항목 :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의 참여비율)
- 확인자료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2	A. 25%이상	2.0
		B. 20%이상~30%미만	1.5
		C. 15%이상~20%미만	1.0
		D. 10%이상~15%미만	0.5
		E. 10%미만	0

5. 사회적신인도(가점 최대 1점)

가. 사고사망망인율(0.5점)

- 심사항목 :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망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망인율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감점)
- 확인자료 : **사고사망망인율 확인서** (대한건설협회)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위반 확인서 (대한건설협회)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고	
사망 만인율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 +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 +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산정예시

< 종합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 2020년 : 2.50
- 2021년 : 1.81
- 2022년 : 2.06

⇒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2.06×0.5 + 1.81×0.3 + 2.50×0.2 = 2.073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 최근 1년동안 기간 중 과태료 부가처분이 확인된 건으로 함
-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감점 처리, 감점한 결과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나. 상호협력점수(0.5점)

- 심사항목 : 상호협력평가 평점
- 확인자료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대한건설협회)
2023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대한건설협회)

※ 매년 6월 말 갱신

【상호협력점수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상호협력평가	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0.5점)

- 심사항목 : 공동수급체 중 건축, 토목공사업으로 참여한 **지역업체의 공중 전문성 비중**
- 확인자료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동일종공그룹 실적 확인서** (대한건설협회)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을 구하고 아래의 점수로 평가

$$\text{공중전문성 비중} = \frac{\text{A의 10년간 동일공중그룹(비주거) 실적 총액}}{\text{A의 10년간 업종별(건축) 실적 총액}}$$

$$\text{A업체 공중전문성 비중 점수} \times \text{A업체 환산 지분율} + \text{B업체 공중전문성 비중 점수} \times \text{B업체 환산 지분율} \dots$$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등 급	점 수
A. 50%이상	0.5
B. 40%이상	0.4
C. 30%이상	0.3

라. 건설인력고용(0.5점)

- 심사항목 : 고용탄력성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 ※ 산정 시 음(-)의 경우에는 0점
- 확인자료 : 임금체불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고용탄력성 점수

1) 고용탄력성점수 (0.5점)

$$A\text{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times A\text{업체 시공비율} + B\text{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times B\text{업체 시공비율} \dots$$

【고용탄력성점수 평가】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비고
고용 탄력성	0.5 0.4 0.3 0.2 0.1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 0.5점)

$$A\text{업체 준수 점수} \times A\text{업체 시공비율} + B\text{업체 준수 점수} \times B\text{업체 시공비율} \dots$$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평가】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점
1~2건	0.1
3~4건	0.2
5~6건	0.3
7~8건	0.4
9건 이상	0.5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를 산정(2024발주 시 21~23년도, 하수급인 포함)
-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6.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2+α)

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2+α)

- 심사항목 : {시공비율 × 추정가격(45,876,129,014)} > 시공능력평가액 일 때 2점씩 감점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업체마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 확인자료 :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대한건설협회)

※ 매년 7월 말 갱신

- 복합업종일 경우 평가대상업종(**건축**)만 적용하며 환산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지역의무공동도급일 경우 지역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2배 범위내에서 인정**